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부속기관 사업비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0조에 명시한 하부조직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책사업'이라 함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과 협약 또는 계약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비'라 함은 산하 부속기관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업경비를 말한다.
3. '간접경비'라 함은 산하 부속기관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하는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사업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총장 또는 단장, 부속기관장이 지원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는 모든 사업비에 적용한다. 단, 지원기관의 기준이 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 (과제 공모·신청) ① 단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공모하는 사업 신청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지원하며, 필요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국책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기관의 신청서식에 의거하여 신청 마감일 7일 전까지 관련 신청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책사업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간접경비는 고시된 간접비율을 계상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의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5조 (사업비 중앙관리) ① 모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 한다.

② 단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업수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단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비 회계) ① 모든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세입·세출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의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 사항을 명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항목별 집행기준)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관리규정을 따른다. 단, 지원기관의 지침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8조 (간접경비 징수 및 관리) 간접경비 징수비율은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부속기관의 설립 및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5%를 징수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